

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은미 의원)

의안 번호	54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6년 2월 25일

발 의 자 : 이은미 의원

찬 성 자 : 김성기, 심현정, 이창열 의원

1. 제안이유
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보육현장의 안정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불임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6. 2. 10. ~ 2026. 2. 23.(14일간), 의견없음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평창군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군수의 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채용조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보육교직원 고충상담, 심리검사 및 진단, 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원 사업
2.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4.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사업
5.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

6.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에 따른 “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”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<지방자치법>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략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시·도유산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6. ~ 7. (생략)

<영유아보육법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
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
3. “어린이집”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.
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

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<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>

제3조(책임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매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평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제2장 보육정책위원회

제4조(설치)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, 사업,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보육전문가
2. 어린이집의 장(이하 “시설장”이라 한다) 및 보육교사 대표
3. 보호자 대표
4.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
5. 관계공무원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7조(임기 및 해촉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위원의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
3.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제8조(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·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관련 조문 : 제7조
- 비용발생 요인 :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사업(권익보호,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, 복지증진, 법률상담 등) 추진 시 사업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서진
연락처	(033) 330 - 2124